

第16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4.3.9.~3.1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6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237
II. 제1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39
III. 제1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45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	253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55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61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3월 9일 (화요일) 10시 59분

## 開會式順(第165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0시 59분 개식)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 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1분 폐식)

지금부터 제1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3월 9일 (화요일) 11시 01분

## 議事日程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4. 2004년도지역교육청및직속기관특색사업청취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5. 2004년도지역교육청및직속기관특색사업청취의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0일자 및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청 간부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호명순으로 인사함)

### ● 교육감 김천호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 위원님 여러분!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3일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교육의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관점아래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젊은 교육, 희망찬 도약의 비전의 실천을 위하여 교실수업 도약의 해로 설정한 금년도 교육시책 등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본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 지방교육기획과, 지방교육재정과 및 부총리실을 거쳐 고향의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기 위하여 새로 오신 전찬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다음은 전산기계공고 교장으로 재직하다 새로 오신 연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영동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직하다 금년 본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그리고 내년도 전국소년체전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 오신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감)

### ● 의장 이상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경과보고

#### ●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 의사과장 김장한

의사과장 김장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2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2월 27일 공고 제2004-4호로 제1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같은날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6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6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회기는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안건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산회 후에는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지역교육청및직속기관특색사업청취의건을 의결하신 후 3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9일부터 3

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 포함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충북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교육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함에 따라 2004년부터 교육행정기관의 토요일무제 실시와 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하고, 토요일 근무는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 또는 전원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부칙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 ● 의장 이상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10분)

###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

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04년도지역교육청및직속기관특색사업청취의건

(11시 11분)

###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지역교육청및직속기관특색사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지역교육청및직속기관특색사업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의장인 제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특색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목적은 지난 해에 이어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 파악으로 향후 교육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으며,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법은 3월 10일 제2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되, 3월 중 2일간으로 하여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으로부터 각각 하루씩 특색사업에 대

한 청취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지역교육청및직속기관특색사업청취의건은 3월 중 2일간으로 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3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진옥경 위원님과 김남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제1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심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3월 10일 (수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안용균 총무과장께서 폭설피해지역 노력봉사 참가자 인솔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진옥경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진옥경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진옥경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제165회-제2차 본회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2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9일 제1차 본회의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1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2004년부터 교육행정기관의 토요일휴무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변경하고, 교육감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려고 하려는 것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여비조례의 제명과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기관의

지방공무원을 각각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여비조례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으로 하여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및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3)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옥경 위원장님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옥경 위원께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24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진옥경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 발언대로 나옴)

### ● 진옥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제4대 교육위원회 이상일, 고규강, 성영용,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위원이 본인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 경고 조치한데 대하여 저는 소회를 밝히고, 우리 교육자치의 나아갈 바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언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11월 8일 제4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는 지역 43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에 학교급식조례 청원요청을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전국 각 시·도의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부응하고자 하는 충청북도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좌절되었습니다.

당시 청원소개위원으로서 저는 본 기각의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였던 바 이에 대해 넉 달이 지난 뒤에 징계를 재론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전국적인 위상 실추를 초래한 데 대해 크나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징계의 부당함은 공익보호와 사회정의구현에 앞장서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성명서들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2004년 2월 27일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의 성명서에서 제4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잘못된 징계결정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성명서 및 의견서 역시 전국적인 급식조례 제정의 흐름 속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지방자치의 정신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분노해마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기에 교육 개혁을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역부족을 절감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주민들의 소박한 바람과 시대적 요구를 묵살하여 시대착오적인 교육위원회라는 지탄을 받으면서 어찌 교육자치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참다운 교육자치는 교육위원회의 분리 독립을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결코 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주민의 바람에 겸허하게 귀기울이고 그들의 공익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을 암중모색하며 분투할 때 비로소 한걸음 내딛는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3월 10일 충청북도 교육위원 진옥경.

(진옥경 위원 자리로 돌아감)

(고규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고 말함)

● 의장 이상일

네, 고규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강 위원 발언대로 나옴)

● 고규강 위원

진옥경 위원님이 급식조례, 또 교육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셨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진리를 매개체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사회는 법과 질서 속에 이 사회의 모든 구성을, 또는 질서, 또는 행위,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또 이는 이것이 교육위원으로서 급식조례를 해야 될 문제인가 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시민단체가 올렸다는 것은 부끄러운 소치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이 교육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학교가 교육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다 한 차원 높은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이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교육위원이 있다면은 이것은 학교 전체의, 또는 사회 전체의 법과 질서를 문란시키는 이러한 교육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더 공부를 하셔서 시민단체도 공부를 해서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인가를 명백히 구분해서, 그 속에는 법을 전공한 교수도 있겠고, 또한 그 속에는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인가도 분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급식조

례를 올렸다는 것은 충청북도의 부끄러운 소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학교급식조례를 정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부의장단 회의에서 이 조례를 짓고, 그 부의장단들도 '아,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례라고 틀린 것이 다.' 해서 전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을 맨날 앞세워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사회는 법을 어겼을 적에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법을 고치기 전에는 그 법에 순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사약을 받았습시다.

이것이 배운 사람들의 소치이지, 더구나 교육위원이 법을 어기면서 무력적으로 또는 법과 질서를 파괴하면서 어떤 것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규강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백년만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리 도내 곳곳에서도 많은 재난을 당했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재난을 당하신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내의 학교 중에서 폭설의 피해를 입은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9일 우리 교육위원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여러 학교 중 청주여자고등학교와 청주농업고등학교의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고, 학생들의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항구적인 복구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폐회)

[제165회-제2차 본회의]

---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3)



제1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4. 3. .

의 장 이 상 일 이 상 일

위 원 진 옥 경 김 옥 경

위 원 김 남 훈 김 남 훈

의사국장 이 상 기 이 상 기







(별첨 2)

의안번호	제 165-1호
의결 연월일	2004년 2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4년 2월 26일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5-1호
----------	----------

제출년월일 : 2004. 2.2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2004년부터 교육행정기관의 토요일휴무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함(안 제명).
- 교육감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항).
-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2항).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함(안 부칙 제2항).

## 개정조례안 : 붙임

## 참고사항

- 신·구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한다.
2.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5조의2(토요일전일근무제) ①교육감은 국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p><u>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u></p> <p>제1조(목적) . . . <u>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u> . . . . .</p> <p>제15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6786호]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첨 3)

(제165회 임시회)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3. 1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2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4년 3월 9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4년 3월 9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진찬구)

#### 가. 발의이유

-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2004년부터 교육행정기관의 토요일휴무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함(안 제명).
- 교육감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항).
-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2항).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함(안 부칙 제2항).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2004년부터 교육행정기관의 토요일휴무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하고,

교육감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제명”과 제1조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을 각각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第16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1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69

## 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279
2. 서면답변서 ..... 281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3월 9일 (화요일) 11시 18분

議事日程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8분 개회)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11시 21분)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진옥경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진옥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옥경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옥경

위원장을 맡은 진옥경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원만한 위원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 위원장 진옥경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성영용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진옥경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이번 조례심사소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 할 것을 인사에 대신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2분)

● 위원장 진옥경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 하루로 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3분)

##### ● 위원장 진옥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금년도 토요일휴무제 시행지침은 2000년 5월달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제 근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 2002년 4월부터 행정기관에 대해서 월1회씩 토요일휴무제 실험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학교가 정상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3년 8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주5일제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단계별 도입일정은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월1회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데 이거는 금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월1회 토요일휴무를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월2회 휴무를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내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을 휴무하는 전면 실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제도를 보완해야 될



방향은 연간 공휴일수를 갖다가 한 2일내지 3일정도 축소하는 것이 지금 되어 있고, 조정시기는 내년도 7월이나 또는 그 이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일수가 현재 최대 23일로 되어 있는데 연가일수도 한 2일정도 축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갖다가 매년 11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 5시 퇴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없애고서 11월부터 2월까지도 6시 퇴근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근무시간 조정시기는 금년 11월부터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행정기관의 금년도 토요일휴무제 시행지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에는 6월까지 월1회 휴무를 합니다. 휴무일자는 매월 넷째 토요일이 됩니다. 매월 넷째 토요일에 휴무를 하는데 휴무일은 기관장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휴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학교는 저희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는 금년 3월부터 확대 실시하는데 참고로 금년도 저희 도내 학교는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4개교, 특수학교 1개교해서 39개교를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월1회 모든 학교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토요일휴무제가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부담을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 학교는 다 정상 출근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쉬기 때문에 서로 학교하고 저희 교육청하고의 연락관계 이런 것이 업무적인 협의관계가 부담이 되어서, 토요일휴무제를 하더라도 당연히 민원실은 교대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각과에 한명씩을 토요일날 나와서 언제든지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하고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서 토요일휴무제라도 각과에 한명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휴무제에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주나 언제 적당한 시기를 마련해서 휴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서, 도서관도 역시 토요일휴무제 실시하는데 일단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대로 근무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옥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순에 따라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토요일휴무제 때문에 거기 맞추어 갖고 교육감이 융통성 있게끔 토요일휴무를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애기죠. 그렇죠.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이, 지금 설명한 것은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면 조례범위 안에서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하실 예정인데, 지금 학교도 적당한 시기에는 토요일에는 수업을 안하고 휴무를 할텐데 거기과 같이 맞아 들어가게끔 이렇게 시간조절을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걱정하셨던 대로 행정기관은 쉬는데 학교는 수업을 하고 있다든지 하면 전화정도 받을 수 있는 분만 근무하신다면 그 이외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애기인데 그거하고 맞춰나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조례는 우리가 제정한다면 그 안에서 그걸 융통성 있게 그것을 토요일휴무 문제는 지정해 갖고 하겠지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원기관하고 휴무관계 같이 맞춰나가 준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하는 문제 또 하나 하고, 방금 근무시간을 11월달에 동절기에 5시에 하던 걸 6시로 연장함으로써 전체적인 공무원 근무시간과 토요일휴무제함으로써 근무하는 그 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갖고 이렇게 1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거는 우리 충북교육청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교육공무원들을 그렇게 조정해 갖고 1시간씩 더해서 하는건지 그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안용균

우선 근무시간에 대해서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결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 도 교육청 자체가 아니고 전국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해서 각 부처로 연락해서 똑같습니다, 전국이.

공무원 근무시간은 11월부터 5시에 퇴근하도록 한 것을 6시에 퇴근하는 걸 똑같이, 그렇게 되면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다시 또 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하고의 관계는 실제 우선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실시하면서 일반 행정기관은 다 월1회씩 휴무를 했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행정기관만 그걸 못하던 걸 갖다가 행정자치부장관이 그거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판단해서 하라고 그래서 도교육청이라든가 지역교육청을 갖다가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 비해서 한 2년 늦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똑같이 휴무일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학교는 지금 겨우 10%정도 시범실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행정기관도 같이 휴무제 실시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보충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문제는 일반회사하고 관계가 있어서 주5일제를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소기업은 틀립니다.

대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이고 중소기업은 안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밑에 소기업들은.

학생들은 학부모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가 주5일제수업을 하는데 제일 곤란합니다. 사실은 일반기업체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부는 주일5제근무 수업을 하고 또 일부는 부형들이 주5일제근무를 하고 일부는 안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애들이 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도 학교하고 일반행정기관하고 같이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총무과장 안용균

이기수 위원님 답변이 되셨는지요?

● 이기수 위원

예.

● 고규강 위원

고규강 위원입니다.

● 위원장 진옥경

예. 말씀하세요.

● 고규강 위원

토요일 학교는 휴무제가 돼도 교사들은 학생들은 휴무가 돼도 교사들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을 시범학교의 경우 주5일제수업을 하는데 교사들은 모두 출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규강 위원

그러면 시범학교가 끝나고 완전히 토요일이 학교가 휴무가 돼도 선생님들 출근하시는 거죠?

● 교육국장 김전원

주5일제가 정착이 된다면 전면실시가 될 경우에는 그것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고규강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요. 전면실시해도 토요일날 인터넷이나 또는 사이버스쿨로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집에서 학생들이 사이버스쿨로 공부하는 것을 지도하게 해 주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전원

예. 맞습니다.

● 고규강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토요일이 휴무제가 되어도 완전실시가 되어도 교사들은 학교에 출근하게 되는 건 사실이죠?

● 교육국장 김전원

전면실시가 되게 되면 현재는 시범학교가 운영하는 그 기간동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주5일제근무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확대가 되어서 운영될 때에는 주5일제수업도 전국적으로 전면실시가 될 때에는 교직원들의 근무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고규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주5일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지금 시범학교인 경우에도 그냥 5일제를 하는 것만 시범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전에 인터넷스쿨말고도 어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텐데 그에 대한 대안마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주5일수업제 시범학교 운영하는 경우에도 자기 집에서 토요일에 자기 집에서 부모님이 안계서 가지고 학생이 집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는 학생들을 미리 조사를 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마련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65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그래서 토요일에는 선생님들이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기간동안에는 출근하시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기타 무슨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국장 김전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못한 것을 주말인 토요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전체 학생들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작된지가 얼마되지 않았습시다마는 정착이 되면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면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 위원장 진옥경

시범학교 운영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다 운영하겠지만 관련한 지금 운영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프로그램들의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진옥경, 간사 성영용,

위 원 고규강,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0 출석공무원 : 4명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총무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 서면답변서(별첨 2)

제1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4. 3. .

위원장      진 옥 경      







(별첨 2)

# 서 면 답 변 서

1. 주5일수업제 운영계획(진옥경 위원)



(www.cbe.go.kr)

학생에게 행복을 / 선생님께 보람을 / 학부모님께 만족을

# 주5일수업제 운영 계획

2004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 주5일수업제 운영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 I.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2항
- 시·도교육국장회의(2003.10.1)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 확대 및 우선시행학교 운영
- 학교81110-1276(2003.10.2)호 '2004학년도 주5일수업제 기본계획'

## II. 배경·목적·방침

### 1. 배경

- 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의 변화
- 나. 창의성, 문제해결력, 감성, 인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의 등장
- 다. 자기주도적 학습 및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에 대한 의식 변화

### 2. 목적

- 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및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확대
- 나.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교육 실시
- 다. 가족간 유대증진 및 사회 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
- 라. 학교공동체 구성원 삶의 질 향상

### 3. 방침

- 가. 2004. 3 : 월1회 도내학교의 10%를 우선시행 실시
- 나. 2005. 3 : 월1회 모든 학교 실시
- 다. 이후 실시 추이를 고려하여 '월2회, 전면 실시' 등 단계적 확대
- 라. 충청북도 주5일수업제 실무대책반 조직·운영

## III. 충청북도 주5일수업제 실무대책반 운영

### 1. 방침

- 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지원
- 나. 교사, 학부모 연수프로그램 및 학생들의 자기시간 관리 능력 배양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

- 라. 연구/우선시행학교 운영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분석·보완
- 마. 문화시설, 수련원, 스포츠시설, 테마학습장 등에 나타난 문제점 분석·보완

## 2. 조직

- 가. 위원장 : 부교육감
- 나. 부위원장 : 교육국장
- 다. 위원 : 초·중등교육과장, 과학실업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계 위원장 포함 10명)

<b>위원장 : 부교육감</b>			
<b>부위원장 : 교육국장</b>			
간사 : 초등교육과장		유관기관 : 자문위원회	
기획연구분과	협력지원분과	개발운영분과	평가분과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교육정보화과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과학실업교육과

## 3. 임무

- 가. 기획연구분과 : 주5일수업제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나. 협력지원분과 : 문화시설, 수련원, 스포츠시설, 테마학습장 등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
- 다. 개발운영분과 : 교사, 학부모 연수프로그램 및 학생들의 자기시간 관리 능력 배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라. 평가분과 : 연구/우선시행학교 운영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분석

## IV. 우선시행학교 선정·운영(도교육청)

### 1. 우선시행학교의 정의

- 연구학교는 아니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주5일 수업의 실시'에 포함되는 학교로 주5일수업제 시행시까지 계속하여 운영하는 학교

### 2. 방침

- 가. 2005년 월1회 모든 학교 실시에 대비하여 시·군 및 학교의 준비체제 구축

나. 지역별, 학교급별 고른 배정으로 2005년 월1회 모든 학교 시행시 권역별 거점학교로 활용

다. 선정 : 도내 초등 25교, 중10교, 고등학교 4교, 계39교 선정

라. 선정 과정 없이 대상학교에 포함시킬 학교

1) 2001. 3월~2004. 2월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로 운영된 학교

2) 국립대학교 부설 초·중·고등학교

### 3. 2004학년도 주5일수업제 연구/우선시행학교 지정수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우 선 시 행 학 교	2 (미원, 보광초)	1 (주덕중)	1 (괴산고)	4
연구종결학교	3 (한송초중, 옥산, 북이초)	1 (감곡중)	1 (주덕고)	5
국립대부설학교	2 (교대부설, 교원대부설일곡)	2 (충북대사대부중, 교원대부설미호중)	2 (충북대사대부고, 교원대부설고)	6
희망학교	18	6		24
계	25	10	4	39

### 4. 학교군 조직

가. 지역교육청별로 선정된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군 조직

나. 학교군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정보교환

다. 학교군 조직 현황

시·도	지역교육청명	학교수		학교군 조직 현황		
				학교군 표시 *	우선시행학교 명	학교군별 학교수
충북	청주	초	48	초1	○동주초 ○수곡초	21
				초2	○증양초	14
				초3	○봉정초 ○교대부설	13
		중	27	중1	◇충북대사대부설중	27
		고	27	고1	◇충북대사대부설고	27
	기타	3	특수1		3	
	충주	초	37	초4	○충주삼원초	15
				초5	○주덕초 ○가금초	22
				중	17	중2
		고	11	고2	◇주덕고(연구종결)	11
		기타	3	특수1		3
	제천	초	23	초6	○동명	12
				초7	◇한송초중(연구종결) ○금성	11
				중	12	중2
		고	7	고2		7
기타		1	특수1	○청암학교(특수학교)	1	

시·도	지역교육청명	학교수	학교군 조직 현황			
			학교군 표시 *	학교군별 학교수	학교군별 학교수	
충북	청원	초	28	초8	◇미원(연구)◇옥산(연구종결)◇북이(연구종결)◇월곡(부설)◇강외	28
		중	9	중3	◇교원대부설중(부설)	9
		고	7	고3	◇교원대부설고(부설)	7
		기타	1	특수1		1
	보은	초	16	초9	○산외초	16
		중	7	중4	○회인중 ○보덕중	7
		고	4	고3		4
	옥천	초	12	초10	○죽향초	12
		중	5	중5	○안내중	5
		고	3	고3		3
	영동	초	15	초11	○심천초	15
		중	9	중6	○용문중	9
		고	5	고3		5
	진천	초	15	초12	○상산초	15
		중	6	중7	○진천중	6
		고	4	고4		4
	괴산	초	19	초13	◇보광초(연구)○추산초	19
		중	13	중8	○연풍중	13
		고	5	고4	◇괴산고(연구)	5
	음성	초	21	초14	○삼성초	21
		중	9	중9	◇감곡중(연구종결)	9
		고	3	고4		3
		기타	1			1
	단양	초	11	초15	○대가초	11
		중	7	중2		7
		고	3	고2		3
	계	총(11)개교육청	총(454)개교	총학교군수: 초(15), 중(9), 고(4), 기타(1) - 합계( 29 ) 선정과정거치지 않은 학교수 : 연구/연구종료학교수 ( 9 ) 국립대학교 부설학교 ( 6 )		

※ 학교군 조직

초등학교 : 청주시 중학교군으로 조직(주성, 중앙 2군, 봉정 3군)

충주,제천시 도시지역과 음면지역으로 조직

기타시군 시군별 조직

중학교 : 충주,제천,단양군은 충주 중심으로 조직

기타시군은 시군별 조직

고등학교 : 고1군 청주시는 충북대부고 중심

고2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은 주덕고 중심

고3군 청원, 보은, 옥천, 영동군은 교원대부설고 중심

고4군 진천, 괴산, 음성군은 괴산고 중심

특수학교 : 청암학교 중심

## V. 우선시행학교 운영 지원(지역교육청)

1. 교육청별 「주5일수업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2. 우선시행학교 운영 지원 방안 마련
  - 가. 지역교육청별 연구팀·자료개발지원팀 등 구성·운영
  -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다. 지역 특성에 맞는 토요프로그램 개발·보급
  - 라. 우선시행학교 교원, 학부모 연수 및 홍보활동 전개
  - 마. 저소득층 자녀 및 농촌 소규모 학교 지원

## VI. 우선 시행학교 운영

### 1. 학교 여건에 맞는 우선시행학교의 자율적 계획 수립 시행

- 가. 학부모·교원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나. 토요휴업일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
- 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토요프로그램 운영
  - 1)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2)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3) 학교 특성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개발·적용
  - 4)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 라. 우선시행학교의 기능
  - 1) 지역의 거점학교로서 지역 학교에 대한 자문 역할
  - 2) 주5일수업제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2.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

#### 가.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확보를 위한 학사일정 조정

##### 1) 수업일수의 탄력적 운영

- 가)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으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운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2항 및 105조)

##### 나) 수업일수 감축 절차 준수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업일수 감축 수준을 결정 → 지역교육청에 승인 신청 → 도교육청에 승인 신청(접수된 승인 신청은 일괄 신청) → 도교육청의 승인



- 2) 수업시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학사 일정에 대한 계획 수립
  - 가) 수업시수는 국가수준 교육 과정의 시간배당기준 수업시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학교 행사 및 체험학습활동 등으로 다양화하여 운영
    - 통합학습으로의 연계성 강화
- 3) 학교급별 수준·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도모
  - 학교급이 다른 학교의 선행 연구사례의 단순 답습 지양  
(예 :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의 사례 답습 등)

### <수업시수 확보 사례 : 참고자료임>

- 토요일휴업일의 수업시수를 주중 수업일에 실시하는 방안
- 학교 행사의 축소 및 조정을 통한 수업시수 확보
  - 행사 시간이나 횟수 감축 운영
  - 유사 행사 통합 운영
  - 학년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 행사 운영
- 방학일수 감축을 통한 수업시수 확보

#### 나. 휴업일 체험활동과 교육과정간의 연계

- 1) '교과활동'과 휴업일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간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
- 2) 교과별·교과간 협의를 거쳐 학교 교과수업과 연계된 체험학습 지도
- 3)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가정 및 사회에서의 체험학습요소 추출 지도

#### 다. 학습지도 방법 개선

- 1) 개성과 학생의 능력을 살리는 학습을 실시
- 2) 체험학습의 기회를 확대
- 3) 다양한 학습(문제해결학습, 협력학습, 정보학습 등)을 전개
- 4) 평생학습사회를 도와주는 학습 방법을 모색
- 5)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는 사이버 재택학습을 실시 방안 모색
  - 교수·학습지원단 코너 및 교육정보화지원센터의 활용

### 3. 우선시행학교의 토요일업일 운영

#### 가. 추진 내용

- 1) 토요일업일 지정은 월1회 실시하되 학교 계획에 의하여 추진
- 2) 등교 학생을 위한 다양한 토요일프로그램 개발
- 3) 학생들의 일탈 및 불건전한 생활 예방·지도 철저
- 4) 지역 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학습 참여 권장
- 5) 등교 학생 지도
  - 가)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계획
    - 도서실 및 컴퓨터실 개방 등 학교 시설을 활용
  - 나) 외부강사, 학부모 자원봉사자(도우미) 등의 학생 지도 요령 안내
  - 다) 학교간 토요일프로그램 공유 방안 마련
    - 교내의 별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라) 교외 체험학습 활동을 지도
- 6) 미등교 학생 지도
  - 가) 유익한 여가 활동을 위한 사전 정보 제공
  - 나)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안내
    - (1) 체험학습 활동 안내 자료 제공
    - (2)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내 등
      - 과제를 부여하고 보고서를 제출 받아 지도
      -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과도한 자료나 과제물 제출 지양
    - (3) 학교-가정-사회가 연계된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 강화
  - 다)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와 연계 지도
  - 라) 동아리 활동 등 사전 계획에 의한 활동 지도

#### 나. 생활지도 대책

- 1) 학습부진아 및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적용
- 2) 상담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인사와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생이해 중심의 생활지도 및 상담 활동에 중점
- 3) 학생중심의 다양한 특별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

- 4) 학생자치회 활동을 강화하여 자율·통제 능력을 배양
- 5) 학생들의 흥미, 적성, 소질에 따른 특활부서 운영과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 6) 가족 동반 체험학습 활동 전개로 가족간 대화 시간 운영
- 7) 체계적인 사이버 윤리 지도

#### 4. 학교·사회의 인프라 구축

- 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한 협력 체제 구축·운영
- 나. 학생 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풀(pool)제 운영
  - 학부모,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 및 활용
- 다.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확보 및 프로그램 발굴·활용
  - 1) 박물관, 대학시설, 시(군)민회관, 자연학습장, 청소년회관, 체육관, 도서관 등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운영  
(학생 지도 요원 배치, 학생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 2) 평생교육시설과 연계 교육 강화
  - 3) 교육기관 시설 활용 (학생교육원, 수련원, 학교시설 개방 등)
  - 4) 지역주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시설 및 프로그램 탐색
- 라. 학교간 인적자원, 프로그램, 시설 등에 대한 정보 공유

#### 5. 질 관리 및 홍보

- 가. 우선시행학교 운영 현황 분석 및 결과 환류 체제 마련
- 나. 우선시행학교 운영 결과의 일반화 자료 탑재·활용
- 다. 우선시행학교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
  - 1) 교육과정 운영, 토요프로그램 개발·활용, 학생생활지도 실태, 등
  - 2)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설문 조사·분석
  - 3) 분석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 라. 주5일수업제의 취지, 목적, 운영 사례, 기대 효과 등 홍보

## VII. 주5일수업제에 따른 교원 복무.

1. 우선시행학교는 토요일업일에도 정상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2.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교육공무원법 제41조)
3.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 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게 시행
  - 교원이 토요일업일에 휴가를 신청할 경우, 휴가 허가권자는 교육활동, 교내행사 등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가·병가 등을 허가할 수 있음

## VIII. 향후 추진 계획

### 1.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운영 자료 지원

- 가. 연구/우선시행학교 운영 결과 일반화 자료집 개발·보급
- 나. 연구/우선시행학교 운영 결과 자료 탑재·정보공유 및 활용
  - 교육부 : [www.moe.go.kr](http://www.moe.go.kr)/제7차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자료
  - 에듀넷 : 주5일수업제 사이트를 활용
    - 에듀넷 커뮤니티 주5일수업제 모임에 가입하여 정보 수집·활용
  - 주5일수업제 도교육청 홈페이지 배너 설치 운영(12월중)
    - 연구학교 보고서, 체험학습프로그램 등 정보 탑재·활용
  -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한 정보 탑재·활용

### 2. 일반학교 전면 시행 대비

- 가. 2005학년도 모든 학교 월1회 주5일수업제 실시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준비
  - 학사일정 운영 계획 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의 의견수렴
- 나. 주5일수업제 운영에 대비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운영 방안 마련
  - 운영 프로그램 수집 분석
- 다. 학교공동체 및 학교 관련 단체에 홍보활동을 강화로 운영 여건 성숙
- 라. 주5일수업제 홍보
  - 1) 주5일수업제 홍보 : 언론 보도, 방송매체, 반상회를 통한 홍보

